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근거 마련 등〉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8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 근거 마련	3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등에 관한 벌칙규정 신설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

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전달·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을 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생략)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주민등록·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문서로 신고·신청 등을 하는 경우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¹⁾.

「전자서명법」²⁾은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전자서명 생

1) 「주민등록법」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성에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목록>

인증사업자	인증서	인증서 종류*
금융결제원	YesKey 인증서 서비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공동인증서비스	공동인증서
(주)코스콤	코스콤SignKorea 인증서비스	공동인증서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CrossCert 전자인증서비스	공동인증서
(주)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인증서비스	공동인증서
(주)신한은행	신한SIGN	간편인증
네이버(주)	네이버인증서 서비스	간편인증
(주)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서비스	간편인증
엔에이치엔페이코(주)	PAYCO 인증서비스	간편인증
(주)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인증서	간편인증
주식회사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 인증서	간편인증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 인증서	간편인증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인증서	간편인증
에스케이텔레콤(주)	SK텔레콤 PASS인증서서비스	간편인증
(주)케이티	KT PASS 인증서	간편인증
(주)드림시큐리티	드림인증 전자서명 서비스	간편인증
농협은행 주식회사	NH모바일인증서	간편인증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인증서 서비스	간편인증
(주)우리은행	우리WON인증 서비스	간편인증
(주)엘지유플러스	LGU+PASS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간편인증
중소기업은행	IBK인증서	간편인증
(주)한국정보인증	S-PASS인증서비스	간편인증
(주)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 Lite서비스	간편인증

*전자서명의 종류는 발급기관, 인증방식 등에 따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으로 구분됨.

※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trustesign.kisa.or.kr/intro/cert>), 증명서발급현황

이에 따라, 현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을 하는 경우 전자서명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의 방식으로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2023. 12. 26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³⁾ 2024. 12. 27.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인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 제반 신고·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전자문서를 통한 주민등록 제반 신고·신청 시에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3)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10조4)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법 시행령」⁵⁾은 ①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③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음.

4) 「전자정부법」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5)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 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 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신원확인 방법>

신원확인 방법	종 류	법적 근거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전자정부법」 제10조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아이핀 - 휴대폰 - 신용카드 - 인증서*	「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24.12.27. 시행)	「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이용자 신원확인 후 제공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 하나의 사이트에 로그인시 다른 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로그인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획득한 식별정보를 활용	「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및 비바리퍼블리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간편인증을 말함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주민등록 제반 신고·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나 내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⁶⁾,

개정안의 경우에도 ①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

6)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 p. 220.

법, ②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③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중 어느 범위에서 주민등록 제반 신고·신청에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임.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등에 관한 벌칙규정 신설

개정안은 ①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표시방법을 조작한 자 및 그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전달한 자, ②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만든 자 및 그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등을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 및 ③주민등록확인서비스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19841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벌칙) ①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한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u> <u>3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u>

현행	개정안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신설>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	<u>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u> 4. (현행과 같음)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든 자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생략)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7의2.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8의2.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화면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고⁷⁾,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예정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파일이나 전자문서를 위조·사용·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⁸⁾.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비교>

구분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의	-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음	- 이동통신기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 ※ 신분증에 해당함
근거	- 「주민등록법」 제25조제2항 ※ 행안부장관은 주민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발급	- 비대면으로 발급 ※ 정부24앱 또는 PASS앱(통신3사) 등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발급 ※(대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 (비대면)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이동통신기기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효력	-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 ※ 금융기관 외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편의점·공항, 행정기관에서 민원 서류 발급시 등)	- 온·오프라인 모두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7) ‘00년생 김서경’...이 가짜 ‘민증’에 술집·클럽·편의점 다 뚫렸다, 서울경제, 2024. 5. 26.

8) 참고로, SNS 등을 통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130만원에 면허증 위조 가능” 신분증·문서 위조업자 기승, 아시아경제, 2024. 1. 15

“가짜 신분증 2만원”...청소년 노리는 위조범죄, 매일경제, 2024. 4. 4.

그러나 현행법⁹⁾은 ①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변조¹⁰⁾에 해당함)하여 사용한 자, ②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③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①‘모바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당하게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변조하여 사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화면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파일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전달·사용하는 경우’ 및 ‘자신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거나 제공·전달·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한 자’, ‘위조·변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전달·사용한 자’, ‘모바일 주민등

9)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4.12.27. 시행)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0) “위조”는 작성권한 없이 타인명의를 모방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상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각론』, 김성돈, 2019. p. 631-635.)

록 확인서비스를 위조한 자’, ‘위조된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제공·전달·사용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및 개정안의 처벌대상>

현행법	개정안
① <u>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전자문서 등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u>	① <u>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자</u>
② <u>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 사용한 자</u>	② <u>변조한 사실을 알면서 <u>변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u></u>
③ <u>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u>	③ <u>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자</u>
	④ <u>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u>
	⑤ <u>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u>
	⑥ <u>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전달 또는 사용한 자</u>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및 위·변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의 사용은 「형법」 제225조¹¹⁾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 및 「형

11)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 제229조의 위조등 공문서 행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법원¹²⁾은 변조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행사한 경우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으나,

해당 판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의 판례로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달리 그 자체로 공문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¹³⁾.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및 위·변조된 실물 주민등록증의 행사는 「형법」 제22조 및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및 위·변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제공·전달·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2) ‘대법원, 2007. 11. 29. 2007도7480’

13) 형법상 문서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지속성, ② 증명기능, ③ 보장기능(작성명의인의 존재)가 제시됨.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형법상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므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간 형벌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체계정당성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개정안의 경우 ①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②위·변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제공·전달·사용, ③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위조, ④위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제공·전달·사용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변조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변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제공·전달’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상술한 대법원의 판례(2007도7480)를 근거로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은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 및 위조등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칙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